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천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73
----------	------

발의연월일: 2021. 10.

발 의 자: 오천수 의원

찬 성 자: 양옥희 의원, 이민옥 의원  
김현주 의원, 신동욱 의원

## 1. 제안이유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병역명문가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협조요청(안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병역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나. 협조부서: 복지정책과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1. 11. 12. ~ 2021. 11. 17.)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천수 의원 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

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국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4호 사용료 할인 중 30퍼센트 감면 부분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

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

④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